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제716호 번 호 관련 제안연월일 : 2021년 7월 13일

제 안 자 : 이상식의원 외 5명

1. 수정이유

○ 정의 규정과 적용대상, 지원대상 등을 수정·삭제하여 법률과 제도 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, 일부 조문의 수정을 통해 입법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

2. 주요내용(수정내용)

- 조례의 목적과 도지사의 책무 등을 명확히 함(안 제1조, 제5조)
- O "노동안전보건", "노동자" 등의 정의를 수정함(안 제2조)
- O 적용대상의 범위를 도내 모든 사업과 사업장으로 하고 시행시기를 2021년 11월 19일로 함(안 제3조, 부칙)
- O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삭제함(안 제10조)
- O 충청북도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노동안전지킴이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(안 제11조)

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산업현장과 노동 환경의 변화에 맞춰 산업재해를 예 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 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안 제2조제1호 부터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"산업재해"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를 말한다.
- 2. "노동안전보건"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노동안전과 신체적·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 및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.
- 3. "노동자"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, 용역 또는 기타 계약 등의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비롯해 유사형태 종사자와 불완전 고용환경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.
- 5. "노동안전지킴이"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·조사·개선·지도·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는 충청북도(이하 "도"라 한다)에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.

안 제4조를 삭제하고,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.

안 제5조(수정 후 안 제4조) 제1항 중 "(이하 "도지사"이라 한다)은"을 "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"으로, "일하는 시민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, 실행계획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한다"를 "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"을 "노동 안전보건을 증진하기"로, "구축"을 "마련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"를 "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증진하기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안 제7조(수정 후 안 제6조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노동안전보건계획 수립)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적용대상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노동자 참여 확대방안
- 2. 노동환경 취약분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지원사업
- 3. 충청북도형 분야별 노동안전보건대책 마련
- 4. 충청북도형 사업장 위험·유해 도급금지 등 관련 규정 마련
- 5. 충청북도형 노동안전보건 가이드라인, 매뉴얼 제시
- 6. 사업장 이행실태 현장점검 및 교육, 컨설팅, 시정조치
- 7.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
- 8.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시책에 대한 홍보
- 9.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
- 10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충청북도 산재예방 시행계획(이하 '시행계획'이

- 라 한다)을 매년 수립 · 시행하여야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산재예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⑤ 도지사는 도 출자・출연기관을 평가할 때 노동안전지표를 반영할 수 있다.

안 제8조(수정 후 안 제7조)의 제목을 "노동안전조사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조사하고 개선하기"를 "조사하기"로, "둔다"를 "둘 수 있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이 조례 및 관련 법령"을 "관련법령이나 조례"로, "점검하고지도한다"를 "지도·점검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은 삭제한다.

안 제9조(수정 후 안 제8조)의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"제3조 본문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며"를 "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"로 "증진·향상"을 "증진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및 제7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5. 노동안전지킴이단의 사업장 출입허용 등 협력
- 7. 산재예방을 위한 각종 활동에 하도급 노동자 및 특수고용 노동자 참여 보장
- 안 제10조를 삭제한다.
- 안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.
- 안 제11조(수정 후 안 제9조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- 제9조(노동안전지킴이단 운영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충청북도 노동안전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1. 노동안전보건 관련 예방과 감시활동 및 법규 위반의 신고
 - 2. 도 및 공공기관의 발주 또는 수행사업 활동 지도점검
 - 3. 제도개선 및 정책 건의
 - 4. 기타 증진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

- ② 도지사는 노동안전지킴이단의 사업장 점검과 예방활동이 사업장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도 관계 부서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한다.
-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단으로 위촉할 수 있다.
- 1. 공인노무사,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
- 2. 기업체 및 노동조합에서 산업안전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
- 3.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
- 4.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
- ④ 도지사는 노동안전지킴이단의 활동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지급 할 수 있다.
- 안 제12조(수정 후 안 제10조) 제1항 중 "일관성·효율성을 도모하고 노사 참 여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"을 "주요사항을"로, "설치한다"를 "둔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자문한다.
 - 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
 - 2. 노동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
 - 3. 노동안전보건의 기반 조성과 확대를 위한 사항
 - 4. 그 밖에 노동안전보건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안 제13조(수정 후 안 제11조)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 - ② 위원은 노동안전보건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, 도 노동안전보건 관련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 - 1. 충청북도의회 의원
 - 2.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
 - 3.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하는 사람
 -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노동안전보건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.

안 제14조(수정 후 안 제12조) 제1항 중 "1회에 한하여"를 "한 차례만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전임위원의"를 "전임위원 임기의"로 한다.

안 제16조(수정 후 안 제14조)의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"① 도지사"를 "도지 사"로 한다.

안 제21조(수정 후 안 제19조)의 제목을 "시행규칙"으로 하고, 본문 중 "관하여 필요한"을 "필요한"으로, "방침"을 "규칙"으로 한다.

-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- 이 조례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무대비표

워 아

수 정 안

제1장 총칙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노동현장의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산업현장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 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에 일의 미래가 불러올 노동안전 보건에 대응하기 위해 충청북도 노동안전보건기준을 확보함으로써 일하는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·안 전·건강·보건을 증진·향상하는 데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.

노동 환경의 변화에 맞춰 산업재 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새롭게 대두되는 산업과 고용형태│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------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 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 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 리는 것을 말한다.
- 1. "산업재해"란 노무를 제공하는 1. "산업재해"란 「산업안전보건 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 재해를 말한다.
- 2. "노동안전보건"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·안 전·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 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. 또한, 노동안전보건은 기술 발전, 기후변화, 산업구조, 다양한 고용형태와 관련된 괴롭
- 2. "노동안전보건"이란 산업재해 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노 동안전과 신체적 · 정신적 건 강을 유지하는 활동 및 사업 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

힘, 스트레스, 디지털 건강 등 변화하는 산업재해 영역의 사회 심리학적 위험요인을 포함한다.

3. "노동자"란 고용형태를 불문하 고, 사업주에게 고용, 용역 또 는 기타 계약 등의 형태로 노 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를 말한다.

- 4. (생략)
- 5. "충청북도형 명예산업안전감독 관"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 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·조사·개 선·지도·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 를 말한다.
- 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의 적용대상 | 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은 다음 각 호 중 충청북도(이하 | "도"라 한다)와 고용 및 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 및 그의 사업주다.
 - 1. 도 및 도 산하 투자·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
 - 2. 도 및 도 산하 기관, 자회사로 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

말한다.

- 3. "노동자"란 고용형태를 불문하 고 사업주에게 고용, 용역 또 는 기타 계약 등의 관계로 임 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 는 사람으로서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비롯해 유사형태 종사 자와 불완전 고용환경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.
- 4. (제정안과 같음)
- 5. "노동안전지킴이"란 사업장 또 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 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·조사·개선·지도·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.

(이하 "도"라 한다)에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.

수 정 안

사,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

3. 도 및 도 산하기관으로부터 보 조금을 지급받거나, 인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, 해당 사업을 다시 위탁 받아 운영하는 업체 소속된 노 동자(다중위탁)

제4조(지원대상) 충청북도가 직접 산 〈삭 제〉 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 원을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상시 근로 인원 50인 미만의 사업장
- 2. 화학·식품 제조업에 6개월 이하로 파견되는 단시간 및 단기계약 노동자
- 3. 스마트폰 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(각종 배달종사자, 대리운전, 화 물트럭기사 등)
- 4. 토목 및 건설 현장
- 5. 상·하수 관리, 청소, 경비 등 시 설관리 노동자
- 6. 외국인 이주 노동자
- 7. 특성화고 실습 및 실습 노동자
- 8. 그밖에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 노동안전보건 지원이 필요하다고

인정되는 노동자나 노동 현장으로 매년 충청북도가 정하는 노동자

제5조(도지사의 책무) ① 충청북도지 제4조(도지사의 책무) ① ------사(이하 "도지사"이라 한다)은 산 업재해를 예방하고 일하는 시민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, 실행계획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한다.

- ② 도지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, 공공기 관 및 노동단체 등과 노동안전보 건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- ③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노동자 및 사업주에 게 필요한 교육, 사업, 안전장비 및 그 밖의 우대·지원 등을 추진 할 수 있다.
- ④ 도지사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 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노동부의 영업정지 및 허가 취소 요청을 받는 경우는 해당 사업장 의 영업정지 및 영업허가를 취소 하여야 한다.

제6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(생 략)

--<u>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</u>---------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정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.

노동안전보건을 증진하기 ----------마련-----.

③ -----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증진하기-----

〈삭 제〉
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(제정안 과 같음)

제2장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수립 및 이행

- 제7조(노동안전보건계획 수립) ① 도 지사는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의 증진·향상을 위하여 4년마다 노동 안전보건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 획")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.
 - ②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적용대상의 산업안전보건법 준 수 및 노동자 참여 확대방안
 - 2. 노동환경 취약분야 산업재해 예 방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지원사업
 - 3. 충청북도형 분야별 노동안전보건 대책 마련(작업중지권 등)
 - 4. 충청북도형 사업장 위험·유해 도급금지 등 관련 규정 마련
 - 5. 충청북도형 노동안전보건 가이드 라인, 매뉴얼 제시
 - 6. 사업장 이행실태 현장점검 및 교육, 컨설팅, 시정조치
 - 7.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명 예산업안전감독관 구성 및 운영
 - 8. 산업재해 예방과 사고조사를 위한 '사고예방 및 사고조사위원회'구성 및 운영
 - <u>9.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시책에</u> 대한 홍보

제2장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수립 및 이행

- 제6조(노동안전보건계획 수립) ① 도 지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 동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4 년마다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 립・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적용대상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노동자 참여 확대방안
 - 2. 노동환경 취약분야 산업재해 예 방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와 지원사업
 - 3. 충청북도형 분야별 노동안전보건 대책 마련
 - 4. 충청북도형 사업장 위험·유해 도급금지 등 관련 규정 마련
 - 5. 충청북도형 노동안전보건 가이드 라인, 매뉴얼 제시
 - 6. 사업장 이행실태 현장점검 및 교육, 컨설팅, 시정조치
 - 7.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노 동안전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
 - 8.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시책에 대한 홍보
 - 9.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
 - 10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

- 10.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 및 향상 인정하는 사항 을 위한 지원 사업
- 인정하는 사항
- ③ 도지사는 노동안전보건 기본계 획을 기초로 '충청북도 산재예방 실행계획'을 매년 수립, 시행하여 야 한다. 실행계획에는 산재예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및 제4조 지 원대상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④ 도지사는 충청북도 노동안전지 표를 반영하여 경영평가 등 기관 과 부서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여 야 한다.
- 제8조(노동안전조사관제) ① 도지사 제7조(노동안전조사관) ① ----는 노동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 항을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조사관을 둔다.
 - ② (생략)
 - ③ 노동안전조사관은 노동현장의 노동안전보건 조치가 이 조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 하고 지도한다.
 - ④ 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지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-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충 11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청북도 산재예방 시행계획(이하 '시행계획'이라 한다)을 매년 수 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 - ④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산재예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⑤ 도지사는 도 출자・출연기관 을 평가할 때 노동안전지표를 반 영할 수 있다.

<u> </u>
<u>조사하기</u>
<u>둘 수 있다</u> .
② (제정안과 같음)
③
관련 법령이나
조례
<u>지도</u> ·
점검한다.

〈삭 제〉

수 정 안

- 제9조(사업주의 협조) 제3조 본문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안 전보건법을 준수하며, 산업재해예 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·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1. ~ 4. (생략)
 - 5. 노동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 5. 노동안전지킴단의 사업장 출입 독관 위촉 지원, 출입허용, 활동 시간 보장 등 협력
 - 6. (생략)
 - 7. 하청 노동자 및 특수고용 노동 7. 산재예방을 위한 각종 활동에 자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 보장
 - 8. (생략)
- 제10조(사고예방 및 사고조사 위원회 〈삭 제〉 구성)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과 노동안전보건 시책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과 노동조합 및 노동계가 참여하는 사고예방 및 사고조사 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도지사는 사업장의 인허가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 지역 주민이 유해물질 배출, 소음, 비산먼지, 오폐수, 공사장 주변 교통사고, 부 실 시공 등과 관련하여 노동안전

제	<u>8조</u> (사업주의	협조)	<u>사업주</u>	<u>는 산</u>
	업안전보건	관련	법령을	준수
	하고,			
				-증진-
			•	

- 1. ~ 4. (제정안과 같음)
- 허용 등 협력
- 6. (제정안과 같음)
- 하도급 노동자 및 특수고용 노동자 참여 보장
- 8. (제정안과 같음)

보건과 직접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그 예방과 피해 대책을 위해 노동자와 노동조합 및 노동계가 참여하는 <사고예방 및 사고조사 위원회>를 구성·운영토록 할수 있다.

- ③ 도지사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도민의 요구가 있거나,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 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계가 참 여하는 <사고예방 및 사고조사 위 원회>를 구성 운영하여 원인을 규 명하고,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 여야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라 사고예방 및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경우 도지사는 위원회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, 조사에 따르는 권고안 이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⑤ 조사 보고서(권고안 포함) 및 이행과정을 공식적인 공간(도 홈 페이지 등)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 며, 자료요청에 대해 성실히 공개 하여 사고 조사가 사회화되고 동 일 재해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도 록 한다.
-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

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 급할 수 있다.

- 관) 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산업재 해 예방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충 청북도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, 운영한다.
 - ② 도지사는 노동자, 노동조합, 산 재예방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 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 받아 위촉하며, 자격, 임기 및 임무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.
 - ③ 도지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의 활동시간을 보장하고,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등 활동 보장을 위한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한다.
 - ④ 도지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, 독립적 | 활동을 보장하며, 사업장 점검과 | 예방활동이 사업장 개선으로 이어 지도록 안전조사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.

- 제11조(충청북도형 명예산업안전감독 제9조(노동안전지킴이단 운영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충청북도 노동안전지킴 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1. 노동안전보건 관련 예방과 감 시활동 및 법규 위반의 신고
 - 2. 도 및 공공기관의 발주 또는 수행사업 활동 지도점검
 - 3. 제도개선 및 정책 건의
 - 4. 기타 증진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
 - ② 도지사는 노동안전지킴이단의 사업장 점검과 예방활동이 사업 장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도 관계 부서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한다.
 -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을 노동안전지킴이단으로 위촉할 수 있다.
 - 1. 공인노무사,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 지자
 - 2. 기업체 및 노동조합에서 산업 안전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 한 사람
 - 3.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 및 기

수 정 안

제3장 충청북도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

제12조(설치 및 기능) ① 도지사는 도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<u>일관성·</u> 효율성을 도모하고 노사 참여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 도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<u>설치한다.</u>
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- 1.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·자문
- 2.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·자문
- 3. 노동현장의 노동안전 및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, 정책에 대한 자문
- 4. 그 밖에 노동현장의 노동안전보건

 조치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

 에 대한 자문

<u>제13조(</u>구성) ① (생 략)

② 위원은 노동안전보건 분야에

관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

- 4.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명예 산업안전감독관
- ④ 도지사는 노동안전지킴이단의 활동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에서 실비 지급 할 수 있다.

제3장 충청북도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

<u>제10조(</u>설치 및 기능) ① ------주요사항을 -
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·자문한다.
- 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
- 2. 노동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법·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
- 3. 노동안전보건의 기반 조성과 확대를 위한 사항
- 4. 그 밖에 노동안전보건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1조(구성) ① (제정안과 같음)

② 위원은 노동안전보건 분야에

워 아

식견이 있는 자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 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

- 1. 충청북도의회 의원 등
- 2.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 험이 있는 자
- 3.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
-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.

제14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5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(생략) 제13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

제16조(결격사유) ① 도지사는 다음 제14조(결격사유) 도지사-----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해당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. 1. ~ 4. (생 략)

제17조(위원장 등의 직무) (생략)

제18조(회의) (생략)

수 정 안

경험과 식견이 있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, 도 노동안전보건 관련 업무 담당 국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- 1. 충청북도의회 의원
- 2.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
- 3.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 표 또는 추천하는 사람
-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노동안전보건 관련 업무 담당 과 장이 된다.

제12조(임기) ① ----------한 차례만-----

- ② -----전임위원 임기의
- (제정안과 같음)

1. ~ 4. (제정안과 같음)

제15조(위원장 등의 직무) (제정안 과 같음)

제16조(회의) (제정안과 같음)

원 안	수 정 안
<u>제19조(</u> 소위원회) (생 략)	<u>제17조(</u> 소위원회) (제정안과 같음)
<u>제20조(</u> 수당 등) (생 략)	<u>제18조(</u> 수당 등) (제정안과 같음)
<u>제21조(방침)</u> 이 조례의 시행에 <u>관하</u> <u>여 필요한</u> 사항은 <u>방침</u> 으로 정한다.	<u>제19조(시행규칙)</u> 필요한 <u>규칙</u>
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부 칙 <u>이 조례는 2021년 11월 19일부터</u> <u>시행한다.</u>

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(수정안 포함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산업현장과 노동 환경의 변화에 맞춰 산업재해를 예 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 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산업재해"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를 말한다.
- 2. "노동안전보건"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노동안전과 신체적·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 및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.
- 3. "노동자"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, 용역 또는 기타 계약 등의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비롯해 유사형태 종사자와 불완전 고용환경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.
- 4. "사업주"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.
- 5. "노동안전지킴이"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·조사·개선·지도·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는 충청북도(이하 "도"라 한다)에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.

- 제4조(도지사의 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도지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,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 등과 노동안전보건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.
 - ③ 도지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필요한 교육, 사업, 안전장비 및 그 밖의 우대·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.
- 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수립 및 이행

- 제6조(노동안전보건계획 수립)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적용대상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노동자 참여 확대방안
 - 2. 노동환경 취약분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지원사업
 - 3. 충청북도형 분야별 노동안전보건대책 마련
 - 4. 충청북도형 사업장 위험・유해 도급금지 등 관련 규정 마련
 - 5. 충청북도형 노동안전보건 가이드라인, 매뉴얼 제시
 - 6. 사업장 이행실태 현장점검 및 교육, 컨설팅, 시정조치
 - 7.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
 - 8.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시책에 대한 홍보

- 9.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
- 10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충청북도 산재예방 시행계획(이하 '시행계획'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산재예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⑤ 도지사는 도 출자・출연기관을 평가할 때 노동안전지표를 반영할 수 있다.
- 제7조(노동안전조사관) ① 도지사는 노동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조사관을 둘 수 있다.
 - ② 노동안전조사관의 자격 및 임기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.
 - ③ 노동안전조사관은 노동현장의 노동안전보건 조치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지도·점검한다.
- 제8조(사업주의 협조)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,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1.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정
 - 2. 유해환경 작업 전 노동자 사전교육
 - 3. 개인 안전관리 장비 지급 및 사고발생대비 보험 가입
 - 4. 노동안전조사관의 사업장 출입 허용 등 협력
 - 5. 노동안전지킴이단의 사업장 출입 허용 등 협력
 - 6.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및 심의의결 사항 이행 및 활동시간 보장
 - 7. 산재예방을 위한 각종 활동에 하도급 노동자 및 특수고용 노동자 참여 보장
 - 8. 그 밖에 도지사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의 협력
- 제9조(노동안전지킴이단 운영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충청북도 노동안전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- 1. 노동안전보건 관련 예방과 감시활동 및 법규 위반의 신고
- 2. 도 및 공공기관의 발주 또는 수행사업 활동 지도점검
- 3. 제도개선 및 정책 건의
- 4. 기타 증진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
- ② 도지사는 노동안전지킴이단의 사업장 점검과 예방활동이 사업장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도 관계 부서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한다.
-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단으로 위촉할 수 있다.
- 1. 공인노무사,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
- 2. 기업체 및 노동조합에서 산업안전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
- 3.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
- 4.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
- ④ 도지사는 노동안전지킴이단의 활동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지급 할 수 있다.

제3장 충청북도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

- 제10조(설치 및 기능) ① 도지사는 도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 한다.
 - 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
 - 2. 노동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
 - 3. 노동안전보건의 기반 조성과 확대를 위한 사항
 - 4. 그 밖에 노동안전보건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11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② 위원은 노동안전보건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

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, 도 노동안전보건 관련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- 1. 충청북도의회 의원
- 2.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
- 3.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하는 사람
-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노동안전보건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.
- 제12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 -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13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 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.
 -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한다.
 -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제14조(결격사유)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 원을 해촉하여야 한다.
 - 1.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 - 2.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
 - 3.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한 경우
 - 4.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15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

총괄한다.

② 부위원정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6조(회의)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
-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.
-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,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적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17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-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.
- 제18조(수당 등)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